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601
------	------

2021. 9. 7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8월 11일, 김정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1. 9. 7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정태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일자리 환경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4 이상으로 확대함(안 제4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·출연 기관 등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기존 3% 이상에서 4%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음.

나. 청년실업 및 청년 고용의무 현황

-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, 청년실업률¹⁾은 올해 2월 10.1%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7월 기준 7.2%를 기록했으나, 여전히 전체 실업률(3.2%)의 두 배를 넘고 있으며, 청년확장실업률²⁾은 22.7%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.
 -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10.5%로 전국 평균 9.4%에 비해 높으며, 경북 (11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임(2021년 2/4분기, 통계청).
-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축소되고, 수시·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임.

1) 청년실업률은 15~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뜻하며, 청년 실업자수를 청년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함.

2) 청년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표로 구직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을 원하는 '잠재경제활동인구' 등을 포함한 지표로 시간제 근무 종사자도 실업자로 판단해 실업률에 반영함(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상황판 2021. 8 31).

-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를 부과하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,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장려금과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임.³⁾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」에 따라, 정원 30명 이상의 투자·출연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%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(26개)의 청년고용률은 2018년 4.5%에서 2020년 6.3%로 증가했으며, 2021년 현재 413명(1.4%)을 신규 채용하고, 하반기에 565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음(7월말 기준).

< 2021년 서울시 투자·출연 기관 청년 고용의무 추진현황 >

(단위 : 명)

연번	기관명	정원 (A)	'21 청년신규 채용 실적(B)	'21 정원대비 청년고용률 (B×100/A)	비고
총계		28,769	413	1.4%	2020년 평균 6.3%
1	서울교통공사	16,523	18	0.1%	
2	서울시설관리공단	3,842	84	2.2%	
3	서울시농수산물공사	364	1	0.3%	
4	서울주택도시공사	1,313	0	0%	
5	서울에너지공사	280	15	5.4%	
6	서울의료원	1,741	172	9.9%	
7	서울산업진흥원	304	17	5.6%	

3)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심의·의결함(2021. 8.26).

8	서울신용보증재단	478	1	0.2%	
9	세종문화회관	443	5	1.1%	보안, 청소 등 청년층 수요 낮아 전년도 1.5% 실적
10	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	165	5	3.0%	
11	서울복지재단	180	4	2.2%	
12	서울문화재단	226	0	0%	
13	서울디자인재단	160	0	0%	
14	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	77	2	2.6%	
15	서울관광재단	159	15	9.4%	
16	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	150	0	0%	
17	서울디지털재단	45	3	6.7%	
18	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	420	6	1.4%	상당 직군은 장총업무 적합도가 높아 전년도 1.2%실적
19	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	49	7	14.3%	
20	서울기술연구원	98	2	2.0%	
21	서울시사회서비스원	572	7	1.2%	
22	서울시미디어재단 TBS	398	6	1.5%	
23	서울물재생시설공단	372	38	10.2%	

※ 제외대상기관 : ① 정원 30인 미만(서울장학재단), ② 직무 특수성에 따른 적용제외(서울연구원, 서울시립교향악단)

다. 청년 고용의무 비율 상향(안 제4조)

-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기존 3% 이상에서 4%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----- ----- ----- 100분의 4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-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축소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공공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는 입법효과가 있음.
- 현행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%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.⁴⁾
- 개정안은 이러한 관계법률의 입법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고, 지역 특성에 맞춰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으로 상향하여 청년고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음.
- 다만, 청년에 대한 고용 우대는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, 이는 연령 등의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

4) 제5조(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)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「고용정책 기본법」⁵⁾등과 상충될 우려는 있음.

- 아울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야 할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,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.

5)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7조(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)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·채용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신앙, **연령**, 신체조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학력, 출신학교, 혼인·임신 또는 병력(病歷) 등(이하 “성별등”이라 한다)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, 고령자(高齡者)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,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발 의 자 : 김정태, 고병국, 권영희,
김경우, 김태호, 문병훈,
여 명, 이세열, 임종국,
장상기, 채유미, 최정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일자리 환경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4 이상으로 확대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0분의 3” 을 “100분의 4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<u>100분의 3</u>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4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